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36
----------	-------

발의연월일 : 2026. 9. 7.

발 의 자 : 소병훈 · 김재원 · 이수진
박용갑 · 이춘석 · 서영석
권향엽 · 이인영 · 전종덕
강준현 · 안태준 · 김 윤
서미화 · 권칠승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간호종합계획에도 인권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간호사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4조 등).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①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u>이하 이 조에서 “인권침해행위”라 한다</u>)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략)	제27조(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① ----- ----- ----- ----- ----- <u>이하</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6. (생략) <u><신 설></u>	제31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u>7.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u>

<u>7.·8.</u> (생략) ② ~ ④ (생략) 제34조(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u>8.·9.</u>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종합계획에는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	---